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5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 강유정·박희승·김영배

복기왕 • 이훈기 • 강준혁

박지원 · 정을호 · 백승아

박홍근 • 박해철 • 박 정

조 국・송재봉・손명수

서영교・이용우・허 영

오세희 · 김영환 · 이광희

임오경 · 최민희 · 문금주

문대림・양문석・김 현

이기헌 • 위성곤 • 조계원

박홍배 • 민형배 의원

(329])

제안이유

현행 법률은 블랙리스트사태의 발생을 계기로 문화예술계의 차별적인 문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고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예술 발전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현행법률의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념 적 성향에 따라 예술인을 분류하고 이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 익을 가하는 등의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자유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블랙리스트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예술의 다양 성과 창의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블랙리스트사태를 국가기관, 공공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법·제도·정책·프로그램·행정 등의 수단 또는 강요·회유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을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신설).
- 나. 블랙리스트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이 법 시행 이전의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중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제15조 및 제20조).
- 다.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함(안 제21조제2항).

라.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는 등의 블랙리스 트 작성 행위와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41조 및 제42조).

법률 제 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블랙리스트사태"란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법·제도·정책·프로그램·행정 등의 수단 또는 강요·회유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을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하는등의 행위를 하여,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을 말한다.
- 6.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제15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블랙리스트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제20조제2항제2호 중 "사항"을 "사항(위원회가 이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중 그 중대성을 인정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블랙리스트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10. 위원회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건

제21조제2항 중 "예술인의"를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로, "및 관계 중 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를 "중에서"로, "임명하거나 위촉한 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 공무원을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중 "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을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를 입은 예술인·예술단체·예술인조합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사실을 알게된 사람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제2조제10호라목"을 "제2조제12호라목"으로 한다.

제41조를 제43조로 하고, 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활동 또는 성과 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한 자
 -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
-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 사의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자
 -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관련 문서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한 자
 - 3.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예술지원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지시한 자
 - 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인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인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은 이 법 시행일

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u> <신 설></u>	1. "블랙리스트사태"란 국가기
	관,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
	기관등"이라 한다)이 법ㆍ제
	도・정책・프로그램・행정 등
	의 수단 또는 강요ㆍ회유 등
	의 수단을 동원하여,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을 사찰・감
	<u>시·검열·배제·통제·차별</u>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문화
	예술인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
	<u>을 말한다.</u>
<u>1.</u> ~ <u>4.</u> (생 략)	$2. \sim 5.$ (현행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와 같음)
<u><신 설></u>	6.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
	<u>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u>
	의 용역을 말한다.
<u>5.</u> ~ <u>10.</u> (생 략)	<u>7.</u> ~ <u>12.</u> (현행 제5호부터 제1
	0호까지와 같음)
제15조(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	제15조(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
한 지원 등) ① (생 략)	한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 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 다.
- 1. ~ 5. (생 략) <신 설>
- 제20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 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생략)
 -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에 관 한 <u>사항</u>

3. ~ 8. (생 략) <신 설>

<신 설>

2	

- 1. ~ 5. (현행과 같음)
- 6. 블랙리스트사태의 재발 방지 를 위한 제도 마련

제20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 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② ------
- 1. (현행과 같음)
- 2. -----

-사항(위원회가 이 법이 제정 되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중 그 중 대성을 인정하여 조사가 필요 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포함한 다)

- 3. ~ 8. (현행과 같음)
- 9. 블랙리스트사태의 재발 방지 를 위한 방안 마련에 관한 사 항
- 10. 위원회가 예술인권리침해행

9. (생략) (생 략)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 <u>표현의 자유,-----</u> 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 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⑥ (생 략)

제27조(예술인보호관) ① 문화체 제27조(예술인보호관) ① ------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 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소속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 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한다.

1. ~ 4.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설>

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 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조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건 11. (현행 제9호와 같음)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예술 및 <u>예술인의</u> ② ------<u>예술인의</u> -----<u>중에서</u>----------<u>위촉한다</u>. ③ ~ ⑥ (현행과 같음) 공무원을 예술인보호관(이하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예술 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 다)을 둔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보호관을 개방형직

⑥ (생략)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① 예술인·예술단체 또 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침 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 고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34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제 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2조제10호라목에 해당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행위를 한 예술지원기관 또는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에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의 중지,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해당행위로 인하여 시정조

위로 운영하고 보호관이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
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① 예술인권리침해행위
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를 입은
예술인・예술단체・예술인조합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
을 알게된 사람은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시정명령) ①
<u>제2조제12호라목</u>

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신 설>

<신 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술
 인 또는 예술단체의 활동 또
 는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한 자
-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술 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 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한 <u>자</u>
-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 하는 심사의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자

-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심사 관련 문서를 조작하 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한 자
- 3.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예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 정된 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 제하거나 예술지원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지시한 자
- 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

<u>제43조</u>(과태료) (현행 제41조와 같음)

제41조(과태료) (생략)